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4.	
연	월	일	(제	회)

항

결

사

공 공 주 택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법」을 준용하던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내 매입 절차, 부기등기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률적인 적립 요율, 경직된 사용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합주택단지 내 분양·임대 간 형평성 문제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립 요율, 사용 협의절차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49조 및 제52조의2)
- 1)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 1 -

- 2) 거주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 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함
- 3) 거주의무에 관한 부기등기는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제출,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 거주 사실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나, 특별수선 충당금 운영방식 개선(안 제57조)
- 1)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2) 중대한 하자 또는 재난 피해 발생으로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교체·보수에 사용 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3) 입주민의 안전·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민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거주의무 확인 업무위탁(안 제61조)

공공주택사업자 위탁업무에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라.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3조)

주택매입, 거주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9조제5항부터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까지로 한다.
 - 2. 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 7.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 8.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⑨ 법 제49조의5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 ①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 ①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로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제

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14항에 따른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11 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2조의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제5항(제8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2항까지 를 준용한다.
- 제5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제3호와 제7항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8항을 제9항·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임차인)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가능한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한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이나 사업은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내 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하여 입 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교체·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각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입주민의 안전 및 기능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1조제7항제3호·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 제49조의5제11항(법 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거주 의무자의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

제63조제1항제6의3호를 제6의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의3호 및 제6의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법 제49조의5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 및 거주의무 위반 주택 매입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제52조의2제5항, 제61조제7항, 제63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
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 ④	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
	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
	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
	주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
	의무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

간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 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 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 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 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 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

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

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
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
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
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
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
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
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
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
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

<신 설> <신 설>

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8.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주택법 시행 령」 제73조제4항제7호 또는 제 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 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 가 법 제49조의5제6항을 위반하 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u><신 설></u>	<u>줘야 한다.</u> <u>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u>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
<u><신 설></u>	보해야 한다. ⑨ 법 제49조의5 제8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
	공주택사업자가 해당주택을 매
	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u><신 설></u>	<u>이 인정하는 사유</u> ①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
	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
	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
	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u><신 설></u>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II)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 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 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제61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 무를 위탁받은 공공주택사업자 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 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 <신 설>

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사용절차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의5제14항에 따른 거 주의무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 49조제5항(제8호는 제외한다)부 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 립한 후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 우 임차인 대표회의(임차인 대 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임차인)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④ (생략) 1.~2. (생 략) <신 설>

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정 가능한 장기수선계획은 공용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 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한하 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이 나 사업은 제외한다.

(5) (현행 4항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 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내 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임대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 .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 른 분양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

⑤ (생략)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 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곳곳임대주택의 주소지륵 과학 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선충당금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현행 (5)항과 같음)

----. 다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긴급하게 교체 · 보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각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 로서 입주민의 안전 및 기능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 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 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 한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7)~(8)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 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 • 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 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9)·(11) (현행 (7)항 및 (8)항과 같음)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⑥ (현행과 같음)
- 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법 제49조의5제11항(법 제49 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거주의무 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4. · 5. (현행 3호 및 4호와 같음)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 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

<신 설>

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6의2. (생 략)

<신 설>

<신 설>

6의3. (생략)

7. · 8. (생략)

② (생략)

판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법 제49조의5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 및 거주의무 위반 주택

매입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의5. (현행 6의3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580